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03시 50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전체	3
종자업,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	3

종자업,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

2017.07.04 조회수 146 등록자
10:40

- ✓ 민원사무명
종자업,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

- ✓ 민원내용
종자업자, 육묘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이내에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통지

- ✓ 관계법령
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

- ✓ 구비서류

 1.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
 2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✓ 처리부서
농업정책과

- ✓ 협의부서

- ✓ 접수

- ✓ 수수료
없음

- ✓ 처리기간
7

- ✓ 기타사항

- ✓ 흐름도
① 변경신고 → ② 접수 → ③ 서류검토 → ④ 등록부 변경등록 → ⑤ 등록증 발급

- ✓ 기타참고사항

목록

Yeosu Web Contents

